

#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과 세제혜택\*

## Disposal Income Elasticity of the Personal Pension Savings and Its Deduction Effect

전 승 훈\*\*

Jeon Seung-Hoon

강 성 호\*\*\*

Kang Sung-Ho

임 병 인\*\*\*\*

Lim Byung-In

『대우패널자료』와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을 측정해 본 결과, 1994년 6월 이전에 판매된 세제혜택이 없는 연금보험상품이 조사된 1994~1997년 기간은 0.404, 1994년 6월 도입된 세제혜택이 있는 개인연금저축 조사된 1998년 자료에서는 0.153, 2001년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세제 변화 이후 판매된 연금상품이 조사된 2001~2004년 기간은 0.31로 측정되었다.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었던 1998년과 2001~2004년 기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개인연금 불입액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를 추정해 본 결과,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발적인 노후대비를 촉진하려는 개인연금 도입취지와는 달리 개인연금 불입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세제혜택이 노후대비 유인책으로 거의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연금의 노후대비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국문 색인어: 개인연금, 개인연금소득공제, 탄력성

\* 제8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에서 본 논문의 초안에 대해 논평해 주신 류건식 박사(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 경제분석관, 제1저자(jsh1105@nabo.go.kr)

\*\*\*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powerksh0515@hanmail.net)

\*\*\*\* 안동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교신저자(billforest@hanmail.net)

## I. 서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노후소득을 위한 대비가 공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인 측면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정부는 「2006~201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제도 개선과 함께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연금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정비 추진,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기존에 이루어진 개인연금 활성화방안에 대한 평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평가를 통해 기존 정책이 문제점이 정확히 파악되고, 새로운 정책 입안시 이러한 문제점이 충분히 고려될 때, 실효성이 극대화되는 비용 효과적(cost-effective)인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연금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 시장규모는 여전히 작으며, 실질적인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역할 역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sup>1)</sup>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연금 세제지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sup>2)</sup>. 그런데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면, 개인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계획하면서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향후 개인연금 활성화

1)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제도는 1994년 6월 도입된 이후 2000년까지는 개인연금저축, 2001년부터는 연금저축으로 운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 개인연금 시장규모는 2002년 22.4조원에서 2003년 25.9조원, 2004년 29.9조원 수준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작은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06).

2) 현재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주로 세제혜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은 불입단계, 운용단계, 수령단계로 나누어진다. 개인연금 불입단계에서는 퇴직연금 불입액과 합산하여 통산 300만원까지 불입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운용단계에서는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가 이루어지며, 수령단계에서는 9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소득공제가 허용된다. 한편 이상의 세제혜택은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이며, 2001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에 대해서는 불입단계에서는 최고 72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수령단계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었다.

대책 수립 과정에서 비효율적이고 효과가 떨어지는 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중 개인연금 불입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소득공제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검토한다. 기존 연구는 개인연금 도입에 관한 연구, 개인연금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개인연금 가입 및 불입액 결정에 관한 연구,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본다. 또한 제Ⅱ장에서는 본 연구와 기존 연구 간의 차별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제Ⅲ장과 제Ⅳ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 연구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제Ⅲ장에서는 개인연금 불입액 결정요인 추정결과를 토대로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을 측정한다. 제Ⅳ장에서는 개인연금 불입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세제혜택의 변화에 대해 검토한 후, 제Ⅲ장에서 이루어진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 측정결과를 사용하여,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이 개인연금 불입액에 미치는 효과를 소득분위별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글을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 Ⅱ. 기존 연구 검토

### 1. 기존연구 검토

제Ⅱ장에서는 개인연금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개인연금제도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 개인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개인연금 가입결정 및 불입액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개인연금제도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로는 김원식(1996), 배준호(1996) 등이 있다. 배준호(1996)는 미국 개인퇴직계정(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이 소득세수를 감소시키지만 IRA로 축적된 자본이 법인소

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미국의 가계저축과 정부저축을 증대시켜 국민저축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Feldstein(1995)의 연구결과를 발전시켜, 우리나라 개인연금 도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배준호(1996)는 Feldstein의 모형에 IRA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과급효과를 세수변화를 통한 정부저축, 정부채무잔고, 민간저축패턴의 변화를 통한 민간저축의 국민저축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 외에 소비세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경우, IRA로 인해 연기된 소비에 높은 수익이 가산되어 은퇴기 소비와 소비세수가 확보되어, 정부저축 및 국민저축을 더 큰 폭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원식(1996)은 개인연금이 저축, 소득재분배, 세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연금이 현실적으로 다른 저축을 대체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제혜택의 소득효과를 줄여 총저축을 증가시켜야 하며, 개인연금의 성과와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본시장의 운용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원식(1996)은 개인연금이 소득재분배에 역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실제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는 집단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소득재분배는 물론 노후준비를 하도록 하려는 개인연금의 도입의도와는 달리, 개인연금이 더 높은 수익을 찾는 저축자의 전유물이 되면서 세제혜택 등이 고소득층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어질 경우 조세지출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세수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간접세의 비중을 높일 경우에도 소득재분배의 역진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김원식(1996)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김원식(1996)은 국제자본시장 개방에 대비한 기금운용 전략이 있어야 하며,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개인연금 도입 및 정착에 관한 연구로는 김기홍·안중범(1993), 김병연·이건호·신성환(1994), 김원식(1996)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노인부양 부담의 증가, 공적인 연금시스템을 보완하는 사적인 노후보장시스템의 필요성, 미래 소비에 대처하기 위한 장기저축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개인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개인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제도로 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김원식(1996)은 개인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장기적인 정착방안으로 다섯 가지, 즉 개인연금의 다른 연금 상품으로의 이전성 보장, 공적연금과 같은 연금지급액에 대한 물가상승반영, 축적된 기금을 이용한 장기금융상품 운용 여건 마련, 개인연금의 수급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연금보험 기금 혹은 연금보장보험설립, 정부의 개인연금의 사회보장 장치로서의 규제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개인연금 가입 및 불입액 결정에 관한 연구로는 문숙재·김연정(1997), 전승훈·임병인·강성호(2006) 등이 있다. 문숙재·김연정(1997)은 1994년 『대우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가계의 개인연금 보유여부, 불입액 및 그 관련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가 젊을수록, 봉급생활자보다는 자영업자인 경우, 주식을 보유한 경우 개인연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연금 총불입액의 경우 가구주 연령, 순자산, 예금보유 유무 등의 변수와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문숙재·김연정(1997)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개인연금이 보장성이 강한 노후소득방안이라는 기본 취지에 적합한 상품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전승훈·임병인·강성호(2006)는 가계의 저축목적, 구체적인 저축수단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노동패널』 4~7차년도 개인 및 가구 자료를 사용하여, 가구의 개인연금 가입결정요인 및 2001~2003년 기간 중 가입상태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민연금가입자일수록, 저축성보험 불입액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상태가 취업인 상태로 지속될수록, 저축목적이 노후대비일수록, 개인연금의 신규가입 또는 유지가능성이 높아지나,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중도탈퇴 또는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승훈·임병인·강성호(2006)은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통해 '자발적인 노후대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노후대비를 위한 공적·사적 저축에 대한 유인정책, 중장년층의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유인강화와 중장년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금 상품 개발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개인연금에 관한 세제제도에 관한 연구<sup>3)</sup>로는 전영준·한도숙(2000), 정운오·

3) 개인연금 세제관련 기존 연구 정리는 전승훈·임병인·강성호(2006)의 내용을 일부 참고하였다.

박찬웅(2001), 정요섭(2003, 2006) 등이 있다. 전영준·한도숙(2000)은 연금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을 개인연금과 연금관련 조세정책 개편의 효과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그들은 개인연금저축을 민간저축의 증가로 보고 있으나 여기에 허용된 조세지원책으로 인해 민간저축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따라서 개인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이 민간의 순저축을 증가시키기보다 자산간의 대체(일반저축수단에서 개인연금으로의 자금이동)만 가져와서 노후소득준비를 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조세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운오·박찬웅(2001)은 2000년 개인연금 관련 세제 변화 전 후를 비교하면서, 세율이 변하지 않는 경우 공적연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개정제도가 가입자에게 유리하며, 세율이 하락하면 연금 수령액이 매우 많지 않은 한(연간 240만원 이하) 개정제도가 여전히 유리하나 세율이 상승하면 연금수령액이 매우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개정제도가 가입자에게 불리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들은 또한 개정 세법이 보험료 부과시점이 아니라 급여시점에서 과세하는 체계에서 누진소득세체계를 따르게 된다면 가입자에게 불리하지만 국가의 조세수입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요섭(2003)은 개인연금 관련 세제 변화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세제개편 전후에 따른 가입자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하고 있다. 그는 보험료 불입기간이 길수록 금리 차의 효과<sup>4)</sup>가 구연금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보험료 불입시와 연금수급시의 한계 세율 차가 클수록(불입시보다 연금수급시에 한 단계 이상(약 1.5%)의 세율이 낮아질수록) 개정연금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저금리추세로 진입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한다면 가입자에게는 구연금제도가 유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정요섭(2003)은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노후소득 보장이 미흡할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계층보다 노후소득에 별 문제가 없을 소득계층에게 더 크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거나 소득에 관계없이 동등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제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불입금의 일정 비율

4) 불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소득이 증가하게 되므로 납부시 과세하고 급여시 과세하지 않는 과거의 방식(TEE)이 유리하게 된다.

을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을 정요섭(2003)은 제시하고 있다. 정요섭(2006)은 개인연금의 낮은 수익률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낮은 수익률이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한 수익률 효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실증하기 위해 매년의 불입금에서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을 차감한 금액들의 10년·20년 누적합과 매년의 불입금의 10년·20년 단순합이 같도록 하여 연평균 수익률을 구하였다. 그 결과, 신·구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는 한계세율이 올라갈수록 커지지만 불입기간이 10년일 때보다 20년일 때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고, 전반적으로 소득공제로 인한 절대치에 비하면 수익률효과 수치가 작았음을 밝혔다. 특히 구개인연금의 경우 고소득계층을 제외하고는 그 값이 작아 소득공제효과가 미미하였으며, 신개인연금의 경우, 연금수급시의 한계세율에 따라 수익률효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한계세율 8%의 저소득계층을 제외하고는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는 높음을 실증하였다. 정요섭(2006)은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현재의 세제지원방식이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대비 유인이 되기 어려우므로 다른 세제지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을 하였다.

## 2. 본 연구와 기존 연구 간의 차별성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세제혜택이 개인연금 불입액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다.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의 목표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며, 이를 위해서는 미가입자의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개인연금 가입자의 불입액을 증가시켜야 한다. 개인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입이 확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적정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불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 연구들은 2001년 소득세법 개정 전·후 세제혜택의 크기에 초점을 맞추거나(정운오·박찬웅, 2001; 정요섭, 2003),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개인연금 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문숙재·김연정, 1997; 전승훈·임병인·

강성호, 2006),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수혜자는 누구인가(김원식, 1996; 정요섭, 2006), 연금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경제적 효과(전영준·한도숙, 2000)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숙재·김연정(1997)에서 개인연금 불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지만, 세제혜택이 개인연금 불입액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연금 불입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세제혜택이 개인연금 불입액 증가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개인연금 불입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소득공제제도는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경제행위자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개인연금 불입액이 가처분소득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면,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개인연금 불입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이다. 만일 탄력성이 크다면,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불입액 증가에 효과가 클 것이며, 탄력성이 작다면, 소득공제제도의 효과는 기대한 것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을 계산한 후, 소득공제로 인한 세제혜택이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개인연금 불입액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본 분석에서는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을 구할 때 패널자료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처분 소득 탄력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연금 불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연도별 경기상황 등 회귀모형에 반영하기 어려운 요인의 영향에 의해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은 연도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변동을 통제하기 위해 패널자료 분석방법 중 집단간 추정방법 (between-group estimation method)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을 측정한다.

셋째, 본 연구는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의 효과를 평가하면서, 2001년 소득세법 개정 이전과 이후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위해 2001년 이후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자료』(이하 『노동패널자료』)와 2001년 이전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가구패널조사』(이하 『대우패널자료』)를 동시에 사용한다.



### Ⅲ.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치분소득 탄력성 측정

#### 1. 추정모형

제Ⅲ장에서는 개인연금 불입액 결정요인을 추정한 후, 추정결과를 토대로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치분소득 탄력성을 측정한다. 개인연금 불입액 추정모형의 종속변수로는 개인연금 불입액의 대수값을 사용하였으며, 설명변수로는 문숙재·김연정(1997) 등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구주 및 가구 특성관련 변수, 가치분소득 변수 등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가구주 연령, 가구주 성별(여성을 기준으로 남성 더미 사용), 가구주 교육연수, 배우자 유무(배우자 없음을 기준으로 배우자 있는 가구더미 사용), 가구원 수, 18세 미만 가구원수, 주택소유여부, 경제활동상태 더미(임금근로를 기준으로, 非임금근로더미, 실업더미, 非경활동더미 사용), 경상가치분소득의 대수값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설명변수의 영향력에 대해 예측해 보면,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대비 필요성을 크게 느껴 불입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 성별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개인연금 불입액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여성의 경우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은퇴 후 기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사한 이유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개인연금 불입액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상대적으로 긴 은퇴 후 기간에 대비하려는 여성 배우자와 상대적으로 짧은 은퇴 후 기간을 고려하여 소비지출을 늘리려는 가구주 간의 협상과정에서 불입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sup>5)</sup>. 가구주의 교육연수는 개인연금 불입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Beck(1984) 등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은퇴준비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과 유사한 결론이다. 가구원수와 18세 미만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비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연금 불입액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 소유는 개인연금 불입액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전승훈·임병인·강성호(2006)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가구가 우선 주택을 마련한 후 노후를 대비하는 행동양태를 보이기 때

문이다. 경제활동상태의 경우 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가 개인연금 불입액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수준이 높은 임금근로자가구의 개인연금이 높고, 다른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개인연금 불입액이 낮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공적연금, 퇴직금제도(2005년 12월 이후부터는 퇴직연금제도) 등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에 개인연금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따라서 非임금근로자가구, 실업가구, 非경활가구 등의 개인연금 불입액이 높을 수도 있다.

## 2. 추정방법 및 자료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을 추정할 때에는 소득측정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발생하는 급격한 소득 변동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연금 불입금의 변동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보면 평균적인 소득경로를 따르는 경로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보면, 비경상소득의 변화와 경제적 상황변화에 따라 소득이 불규칙하게 변동할 수 있다. 이때 소득의 불규칙한 변동을 통제하지 못하면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은 편의를 갖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소득의 불규칙한 변동을 통제하였다. 우선 가처분소득을 추정할 때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非경상소득을 제거하고 경상소득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경상소득에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

5) 이와 관련된 논의는 Lunberg, Startz and Stillman(2003)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이들은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를 사용하여 배우자가 있는 은퇴자의 경우 은퇴 후 소비가 감소하지만, 그렇지 않은 은퇴자의 경우에는 은퇴 후 소비감소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한 후, 그 원인으로 결혼협상모형(Marital Bargaining Model)이라는 가설을 발전시켰다. 이들의 논의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은퇴 후 기간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긴 은퇴 후 기간에 대비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남성은 평균수명이 여성보다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를 줄이려는 유인을 적게 갖고 있다. 배우자가 있는 은퇴자의 경우, 배우자와의 협상에 의해 은퇴 후 소비수준을 결정하게 되며, Lunberg, Startz and Stillman(2003)은 협상과정에서 은퇴자는 은퇴 후 소비를 줄이게 된다고 주장한다.

동산소득, 이전소득, 사회보험소득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방법은 추정과정에서 패널자료 분석방법 중 집단 간 추정(between group estimation)방법을 사용하였다. 집단 간 추정은 패널자료 전체 기간에 대해 각 가구별 변수의 평균(temporal average)을 구한 후, 이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시간차원을 없애는 분석방법이다. 집단 간 추정은 패널자료의 연도별 관측치 수가 상이한 불균형패널자료를 분석할 때 유의하며, 평균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오차항의 변동이 작아지기 때문에 추정오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sup>6)</sup>.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는 『대우패널자료』와 『노동패널자료』이다. 『대우패널자료』는 1993년~1998년까지 총6회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진 가구패널자료로서, 1994~1998년까지의 자료에 연금보험 가입 가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대우패널자료』에 조사된 연금보험의 경우 1994~1997년 기간 중에는 1994년 6월 이전에 판매된 연금보험상품이 주를 이루며, 1994년 5월 이후 판매된 개인연금저축은 제외되어 있다. 그리고 1998년의 경우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이 연금보험에 포함되어 조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4~1997년 자료에 사용된 연금 보험은 1994년 5월 이전에 판매된 연금보험상품으로, 1998년 자료에 포함된 연금보험은 1994년 5월 이후 도입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연금저축으로 가정하고 분석에 사용한다. 분석에 사용된 가구 표본은 1994~1998년 기간 중 모두 조사에 응한 가구이며 관측수는 2,071 가구 중, 동 기간동안 한번이라도 연금보험 불입액이 있는 885가구의 가구특성자료이다.

『노동패널자료』는 4~8차년도 개인 및 가구 자료를 사용하였다. 4차년도 이후 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계의 저축목적, 구체적인 저축수단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가계의 개인연금 가입여부 및 개인연금 납부액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패널자료』는 개인 및 가구 특성에 관한 조사항목은 조사년도의 특성이 조사되지만, 소득과 소비는 전년도의 소득과 소비가 조사된다. 결국 『노동패널』 4~8차년도 자료는 소득 및 소비 조사기준으로는 2000~2004년도 자료이고, 개인 및 가구특성 자료 기준으로는 2001~2005차년도 자료이다. 따라서 저축, 소

6) 패널자료 분석방법은 전승훈·임병인·강성호(2004)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득 및 소비 조사년도와 개인 및 가구특성 조사년도를 일치시킨 후, 이들 자료 중 2001~2004년 기간 모두 조사에 응한 3,115 가구 중, 2001~2004년 기간 중 한 번이라도 개인연금 불입액이 있는 993가구를 추정에 사용하였다. 『대우패널자료』, 『노동패널자료』 모두 개인연금 불입액이 있는 연도의 가구별 평균자료를 사용하였다<sup>7)</sup>.

### 3. 추정결과

〈표 1〉은 1994~1997년 『대우패널자료』를 이용한 추정 결과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1994~1997년 『대우패널자료』에는 1994년 6월 이전에 판매된 세제혜택이 없는 연금보험에 대한 불입액이 조사되어 있다. 추정은 세 가지 추정모형으로 이루어 졌다. 모형 1에서는 설명변수를 모두 포함시켰으며, 모형 2에서는 소득수준과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여겨지는 경제활동상태 더미와 가구원수를 제외하였고, 모형 3에서는 가구원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18세 미만 가구원수 더미를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표 1〉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세 가지 모형에서 추정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모형 1을 기준으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상수항, 배우자유무 더미, 가구원수, 그리고 非임금근로자 더미는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가구주 연령, 가구주 성별, 가구주 교육년수, 가구소유여부, 실업 더

7) 연도별 개인연금 가입자의 수와 가입가구의 특징은 〈부표 1〉과 〈부표 2〉에 소개하였다.

8) 18세 미만 가구원수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가구원수와 연금불입액 간의 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금불입액을 증가시키는 목적, 즉 개인연금이 노후대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가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녀학자금 마련 등을 위해 개인연금 상품을 활용하여 저축할 경우 18세 미만 가구원수의 존재가 연금불입액에 양의 효과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전승훈·임병인·강성호(2006)에서는 개인연금 가입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저축목적이 노후대비라고 응답한 가구가 개인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음을 실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개인연금 가입가구가 노후대비라는 저축목적에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와 가구가 개인연금 불입액 증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개인연금 가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미, 非경제활동인구 더미 등의 변수는 양의 부호를 갖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18세 미만 가구원 수는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양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이 10% 수준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sup>8)</sup>.

〈표 1〉 연금보험 불입액 결정요인 추정결과(1994~1997년)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상수항	-0.081	0.484	-0.105	0.480	0.005	0.477
가구주연령	0.007	0.005	0.008	0.005 *	0.005	0.004
가구주성별(남성=1)	0.241	0.217	0.218	0.214	0.252	0.214
가구주 교육년수	0.003	0.014	0.003	0.014	0.005	0.014
배우자 유무(유=1)	-0.348	0.218	-0.353	0.217	-0.350	0.217
가구원 수	-0.035	0.044	-0.034	0.044	0.013	0.035
18세 미만 가구원 수	0.085	0.051 *	0.089	0.050 *		
가구 소유여부(소유=1)	0.004	0.079	0.003	0.078	-0.006	0.078
경제활동상태(非임금근로=1)	-0.017	0.075				
경제활동상태(실업=1)	0.088	0.319				
경제활동상태(非경활=1)	0.211	0.229				
ln(경상 가처분소득)	0.404	0.075 ***	0.402	0.075 ***	0.387	0.074 ***
$Adj. R^2$	0.069		0.073		0.068	
관측수	971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표 1〉의 추정결과에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경상가처분소득이다. 한편, 종속변수인 연금보험 불입액과 설명변수인 경상가처분소득 모두 대수값을 취하였기 때문에, 대수 경상가처분소득의 추정계수 값은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이 된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은 1994~1997년 기간 중 0.404로 측정되었다. 즉 가처분소득이 1% 증가할 경우 개인연금 불입액은 약 0.404% 증가하였다. 이는 모형 2와 모형 3의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2〉 연금보험 불입액 결정요인 추정결과(1998년)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상수항	1.179	0.423 ***	1.118	0.418 ***	1.171	0.414 ***
가구주연령	0.004	0.006	0.004	0.005	0.001	0.005
가구주성별(남성=1)	0.070	0.211	0.126	0.203	0.126	0.203
가구주 교육년수	0.005	0.013	0.002	0.013	0.002	0.013
배우자 유무(유=1)	0.115	0.186	0.134	0.185	0.120	0.184
가구원 수	-0.039	0.051	-0.039	0.051	-0.009	0.038
18세 미만 가구원 수	0.049	0.054	0.047	0.053		
가구 소유여부(소유=1)	0.059	0.089	0.078	0.088	0.078	0.088
경제활동상태(非임금근로=1)	0.129	0.076 *				
경제활동상태(실업=1)	0.058	0.242				
경제활동상태(非경제활동=1)	-0.094	0.207				
ln(경상가처분소득)	0.141	0.068 **	0.160	0.067 ***	0.159	0.067 ***
$Adj.R^2$	0.010		0.009		0.009	
관측수	429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표 2〉는 1998년 『대우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연금 불입액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이다. 1998년 『대우패널자료』는 1994년 6월 이후 도입된 세제혜택이 있는 개인

연금저축에 대한 불입액이 조사되어 있는 자료이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변수에서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과 관련 하여 모형 4를 제외하고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보험 불입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은 3가지 모형을 고려할 때 0.141~0.160 범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3가지 모형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값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 모형에서의 평균값인 0.153을 연금보험 불입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표 3〉는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개인연금 불입액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이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모형 1을 중심으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주교육연수와 대수 경상가처분소득이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원 수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의 부호는 앞서의 예측과 일치하는 것이다. 가구주 연령, 주택 소유여부, 비임금근로더미 등은 10%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과 주택 소유여부의 부호는 앞서 예측과 일치하는 것이다. 비임금근로더미가 양의 부호를 갖는 것은 문숙재·김연정(1997)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에 비해 공적연금, 퇴직금 등 기존의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연금에 보다 큰 관심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세 변수의 경우 유의수준이 10%로 낮기 때문에 추정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구주 성별, 배우자 유무, 18세 미만 가구원 수, 실업더미, 비경활더미 등의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형 2와 모형 3의 추정결과는 모형 1의 추정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은 2001~2004년 기간 중 0.3071로 측정되었다. 즉 가처분소득이 1% 증가할 경우 개인연금 불입액은 약 0.31%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모형 2와 모형 3의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3〉 개인연금 불입액 결정요인 추정결과(2001~2004년)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상수항	0.3758	0.2272 *	0.3776	0.2274 *	0.4451	0.2226 *
가구주연령	0.0061	0.0034 *	0.0064	0.0032 **	0.0042	0.0028
가구주성별(남성=1)	-0.0953	0.1253	-0.0978	0.1242	-0.1074	0.1241
가구주 교육년수	0.0395	0.0076 ***	0.0379	0.0075 ***	0.0385	0.0075 ***
배우자 유무(유=1)	-0.0513	0.1100	-0.0492	0.1101	-0.0453	0.1101
가구원 수	-0.0644	0.0291 **	-0.0591	0.0288 **	-0.0365	0.0242
18세 미만 가구원 수	0.0488	0.0324	0.0468	0.0325		
주택 소유여부(소유=1)	0.1011	0.0537 *	0.1054	0.0534 **	0.1016	0.0533 *
경제활동상태(非임금근로=1)	0.0879	0.0519 *				
경제활동상태(실업=1)	-0.4844	0.4249				
경제활동상태(非경활=1)	0.0388	0.1002				
ln(경상가처분소득)	0.3071	0.0322 ***	0.3095	0.0317 ***	0.3091	0.0317 ***
$Adj.R^2$	0.1518		0.1506		0.1497	
관측수	993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한편,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위의 추정결과는 내생성 문제를 갖고 있을 수 있다. 경상가처분소득이 개인연금 불입액에 영향을 미치지, 개인연금 불입액 역시 공제제도를 통해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노동패널자료』에서는 발생하지만, 『대우패널자료』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노동패널자료』의 경우 경상가처분소득과 개인연금 불입액 모두 동일 년도의 월평균 불입액자료이지만, 『대우패널자료』의 경우 연금 불입액은 조사시점에서 조사된 것이고, 가처분소득은 조사시점 직전 1년 동안의 소득이기 때문이다. 이에



〈표 4〉에서는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년도 경상가처분소득을 당해연도 경상가처분소득의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로 사용하여 개인연금 불입액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sup>9)</sup>. 추정결과는 앞서의 추정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치분소득 탄력성 역시 0.31~0.32로 추정되어 앞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4〉 개인연금 불입액 결정요인 추정결과(2001~2004년, 내생성 고려)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상수항	0.4449	0.2322 *	0.4458	0.2324 *	0.5258	0.2274 **
가구주연령	0.0075	0.0034 **	0.0072	0.0032 **	0.0046	0.0028
가구주성별(남성=1)	-0.1470	0.1259	-0.1431	0.1248	-0.1541	0.1247
가구주 교육년수	0.0378	0.0078 ***	0.0360	0.0077 ***	0.0368	0.0077 ***
배우자 유무(유=1)	-0.0016	0.1111	0.0011	0.1111	0.0060	0.1112
가구원 수	-0.0878	0.0299 ***	-0.0830	0.0297 ***	-0.0571	0.0251 **
18세 미만 가구원 수	0.0565	0.0329 *	0.0537	0.0329		
가구 소유여부(소유=1)	0.0840	0.0544	0.0912	0.0541 *	0.0870	0.0541
경제활동상태(非임금근로=1)	0.0815	0.0525				
경제활동상태(실업=1)	-0.6027	0.4279				
경제활동상태(非경제활동=1)	-0.0148	0.1007				
ln(경상가처분소득)	0.3122	0.0367 ***	0.3183	0.0364 ***	0.3172	0.0365 ***
$Adj. R^2$	0.1361		0.1344		0.1329	
관측수	993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9) 내생성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추가적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표 1〉~〈표 4〉의 1994~1997년, 1998년, 2001~2004년 추정결과를 토대로 측정한 연금불입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을 비교해 보면, 탄력성은 1994~1997년 기간 중 0.41에서 1998년 0.105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2001~2004년 기간 중에는 0.31 수준으로 1998년 수준보다는 높아졌지만, 1994~1997년 기간 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98년의 탄력성이 크게 낮아진 것은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표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1998년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지출 역시 크게 감소시킨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 등과 같은 보험은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로 인해 소득수준이 감소하더라도 즉각적인 해약보다는 일정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한 후에 해약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동 시점에서의 가처분소득 탄력성은 작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2001~2004년 기간의 탄력성이 1998년보다 늘어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소득이 늘어나고 여기에 고령화 및 저출산 등 노후준비 필요성 인식은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이어져 이전의 시점에 비해 탄력성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2001년 이후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세제가 변화하면서, 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증가하였다. 이것이 2001년 이후 연금불입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을 높이는데 일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2001~2004년 기간의 탄력성이 1994~1997년 보다 낮은 것은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판매되어 선택의 폭이 늘어나면서, 소득증가에 따른 연금보험 불입액이 증가폭이 1994~1997년보다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발전과 가계의 금융상품가입 행위의 변화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Ⅳ.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과 불입액의 변화

제Ⅳ장에서는 제Ⅲ장에서 측정된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을 사용하여 개인연금 불입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소득공제혜택이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얼

마나 변화시키고, 개인연금 불입액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검토한다.

## 1.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제1절에서는 우선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변화를 불입단계, 운용단계, 수령(급부)단계로 구분하여 체계를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연금 과세체계는 2000년까지 TEE(각출단계에서 과세-운용수익 면세-급부단계 면세)형태였다. 따라서 2000년까지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보험료를 각출단계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과세소득에 보험료를 포함시켜 과세하였고, 연금을 수령할 때에 비과세하는 체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2001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체계가 EET형태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각출단계에서 소득공제해주고 연금수령단계에서 과세하게 되었다. 따라서 납입한 공적연금 보험료를 당해 연도 소득에서 전액(100%) 공제하게 되었다. 여기서 공제대상 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분 제외),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이다. 이와 같은 연금관련 세법 개정은 개인연금에도 영향을 주었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을 도입한지 6년 후인 1994년 6월 20일에 시판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판매 허용된 세제적격개인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근거하여 저축불입액의 40%를 연 72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당시의 공적연금과세 체계가 앞서 설명한 TEE형이었음에도 개인연금에는 소득공제가 허용됨으로써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 특징적인 것은 소득공제와 무관한 총불입한도액도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금액은 월 100만원(분기기준 300만원), 연간 기준 1,200만원이었는데 당시의 개인연금 도입취지가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형 저축 장려였음을 엿보게 하는 부분이다. 총한도액을 1,200만원으로 규정했어도 당시 규정에 따르면, 연 180만원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연금수급시 이자소득세만 면제되었다.

〈표 5〉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구분		(구)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 (신)개인연금저축
과 세	소득공제	연간 저축금액의 40%(72만원)	연간저축금액의 100%(240만원 한도)
	연금 수령시	비과세	- 연금소득세 과세 - 수령시 원천징수세율 5%(주민세 별도) 징수후 종합소득세 신고
중 도 해 지 과 세	중도해지	1.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 불입금액의 4% 추징 (연간 72천원 한도, 주민세 별도) -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각 연도별 원천징수세율 적용)  2. 가입 후 5년 이후 중도해지시 -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각 연도별 원천징수세율 적용)	1.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해지시 - 소득공제 불입금액의 누계액 (연 240만원 이내 불입금 누계액)에 대해 2% 해지가산세 부과(주민세 별도) - 과표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20%)로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신고(주민세 별도)  2. 가입 후 5년 이후 중도해지시 - 과표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원천 징수 후 종합소득신고(주민세 별도)
	특별 중도해지	1. 특별중도해지사유 -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개월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의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신고  2. 추징세 없으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1. 특별중도해지사유 -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의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신고  2. 해지가산세는 없으며, 기타소득세는 5년 이내 중도해지시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한편, 연금급부에 대한 세제혜원은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받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다. 이 요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었다. 즉, 계약만기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일시금 형태로 받을 때에는 그 동안 면제된 이자소득세가 모두 추징된다

(정요섭, 2001). 결국 세제적격개인연금의 각출금 수준이 연간 180만원까지이면 연금과세체계가 EEE형태이고, 연간 180만원 초과분은 TEE형태로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세제적격개인연금은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근거한 연금저축상품이 2001년 1월 1일부터 판매 개시 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공적연금의 TEE체계와 달리 EEE형태였던 개인연금의 과세체계도 세법 개정과 함께 EET형태로 동일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연금관련 세제체계를 상품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요약, 정리한 것이 <표 5>이다.

## 2.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불입액의 변화

### 가. 분석방법

제 2절에서는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개인연금 불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런데 1994년 6월 세제혜택을 포함한 개인연금저축이 도입되기 이전 보험사를 중심으로 판매되던 연금보험상품에는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1994~1997년의 『대우패널자료』에는 1994년 6월 도입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이 제외되고, 그 이전에 도입된 연금보험상품의 불입액만이 조사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분석대상을 1998년 『대우패널자료』와 2001~2004년 『노동패널자료』로 한정한다.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개인연금 불입액에 미치는 효과 측정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첫째, 가구별 개인연금 연간 불입액을 계산한 후 소득공제액을 계산한다. 『대우패널자료』를 사용한 1998년 중에는 개인연금 연간 불입액의 40%가 소득공제액이 되며, 계산된 소득공제액이 72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액은 72만원이 된다.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한 2001~2004년 기간은 개인연금 연간 불입액 전액이 소득공제액이 된다. 단, 개인연금 연간불입액이 2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 소득공제액은 240만원이 된다<sup>10)</sup>.

둘째, 개인연금 불입액 소득공제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변화를 계산한다. 가처분소

득의 변화는 소득공제로 인한 세부담의 변화로 측정이 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처분소득의\ 변화 = 세부담의\ 변화 = 소득공제액 \times 유효세율 \\ (= 종합소득세\ 부담/과세소득))$$

이때 세부담의 증가(감소)가 가처분소득의 감소(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세부담의 변화)는 (-가처분소득의 변화)로 표시된다.

〈표 6〉 과세대상자 소득 분위별 유효세율

구분	1998	2001	2002	2003	2004
소득 상위 10%	0.2156	0.2257	0.2019	0.2051	0.2070
소득 10~20%	0.1188	0.1114	0.0973	0.0962	0.0952
소득 20~30%	0.0904	0.0856	0.0732	0.0715	0.0689
소득 30~40%	0.0670	0.0633	0.0546	0.0528	0.0504
소득 40~50%	0.0567	0.0534	0.0461	0.0438	0.0409
소득 50~60%	0.0481	0.0455	0.0397	0.0371	0.0340
소득 60~70%	0.0400	0.0380	0.0335	0.0312	0.0278
소득 70~80%	0.0330	0.0318	0.0284	0.0271	0.0237
소득 80~90%	0.0320	0.0306	0.0272	0.0244	0.0185
소득 90~100%	0.0366	0.0200	0.0157	0.0129	0.0035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원의 비중	35.7	47.4	49.2	51.3	52.5

주: 유효세율은 납세액/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 계산함.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를 소득 10분위로 구분하였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년도.

10)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퇴직연금도입과 함께 개인연금 소득공제 한도는 퇴직연금 불입액과 합해 300만원으로 개정되었다.

세부담의 변화 계산에 사용된 유효세율은 『국세통계연보』에 제공되는 소득분위별 종합소득세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sup>11)</sup>. 그리고 계산된 유효세율을 적용할 때는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납부자 비율을 고려하여 소득세 미납부자를 제외한 후, 나머지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분위를 나누어 유효세율을 적용하였다. 즉, 종합소득세 미납부자의 비율이 50%인 경우, 전체 가구 중 소득수준 하위 50% 가구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된 상위 50% 가구를 10분위로 구분한 후 각각에 유효세율을 적용하였다.

셋째, 가처분소득의 변화에 개인연금의 가처분소득 탄력성을 적용하여 개인연금 불입액 변화를 계산한다. 가처분소득 탄력성은 1998년은 0.153, 2001~2004년 기간은 0.31을 적용하였다.

#### 나. 소득공제의 개인연금 불입액 변화 효과

〈표 7〉은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해 나타나는 개인연금 불입액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개인연금 가입가구 개인연금 불입액의 평균 변화액은 1998년은 0.66만원, 2001년 1.63만원, 2002년 2.29만원, 2003년 2.52만원, 2004년 2.88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불입액 대비 불입액 변화액의 비중은 3.66%, 10.72%, 11.58%, 11.50%, 12.40%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

11) 한편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변화를 계산할 때에는 개념 상으로는 과세표준(tax base)대비 소득세 부담으로 측정된 평균유효세율을 사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세통계연보에서는 과세표준대비 세부담액에 관한 정보를 근로소득자의 과세계급별로만 제시하고 있어, 본 논문의 분석과정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세소득(taxable income) 대비 소득세 부담으로 측정된 유효(또는 실효)세율(이하 유효세율)을 사용하였다. 과세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과세소득이 동일한 납세자에게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허용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그런데 특정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허용하였음에도 납세자간의 과세표준이 동일하다면 특정 납세자의 과세소득이 그만큼 높음을 의미한다. 수리적으로 볼 때 두 가지 경우에서 추가적인 소득공제액이 동일하다면 과세표준이 낮아진 정도와 과세소득이 높은 정도는 동일하다. 따라서 소득공제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변화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과세표준 대비 소득세 부담으로 측정된 유효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과세소득에 과세소득 대비 소득세 부담으로 측정된 유효세율을 적용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면, 불입액의 변화 및 변화율에 있어 1998년과 2001년 이후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01년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세제가 변화하면서 불입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세제혜택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2001년 이전에는 72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 불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졌지만, 2001년 이후에는 240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불입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2004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 집단의 경우 소득공제에 의해 개인연금 불입액이 7.76만원 21.21% 증가하였으며, 소득 10~20% 집단은 2.40만원 12.26%, 소득 20~30% 집단은 2.58만원 10.25%, 소득 30~40% 집단은 1.36만원 8.23%, 소득 40~50% 집단은 1.34만원 7.38%, 소득 50~60% 집단은 0.12만원 0.68% 증가하였으며, 소득 60~100% 집단은 소득공제로 인한 개인연금 불입액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연금 불입금 소득공제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변화가 크며, 이에 따라 개인소득 납입액이 크게 증가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이전에 이미 비과세 집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연금 불입액으로 인한 소득공제 혜택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1년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세제 개편을 통해 불입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세제혜택이 늘어나면서, 소득증가시 개인연금 불입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세제혜택의 대부분은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요섭의 최근 연구(2006)의 결론과 동일하다.



〈표 7〉 소득공제의 개인연금 불입액 변화 효과

(단위: 만원, %)

구분	1998	2001	2002	2003	2004
전체	0.66 (5.37)	1.63 (10.72)	2.29 (11.58)	2.52 (11.50)	2.88 (12.40)
소득 상위 10%	1.17 (9.44)	5.79 (23.18)	7.15 (21.07)	5.75 (18.43)	7.76 (21.21)
소득 10~20%	0.48 (3.90)	3.09 (17.31)	2.61 (13.65)	3.84 (14.06)	2.40 (12.26)
소득 20~30%	0.29 (2.48)	1.96 (12.86)	2.28 (11.34)	2.46 (11.05)	2.58 (10.25)
소득 30~40%	0.29 (2.35)	1.38 (10.15)	1.80 (10.02)	1.61 (9.02)	1.36 (8.23)
소득 40~50%	- -	0.98 (6.88)	1.08 (7.11)	1.24 (7.34)	1.34 (7.38)
소득 50~60%	- -	- -	- -	0.14 (0.99)	0.12 (0.68)
소득 60~70%	- -	- -	- -	- -	- -
소득 70~80%	- -	- -	- -	- -	- -
소득 80~90%	- -	- -	- -	- -	- -
소득 90~100%	- -	- -	- -	- -	- -

주: ( )는 변화율을 의미.

## V. 요약 및 정책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치분소득 탄력성을 구한 후, 이를 통해 불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소득공제제도의 개인연금 불입액 증가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시기별로 구분하여 이루어졌으며, 각 시기별로 판매된 연금보험 상품 역시 상이하다. 분석에 사용된 1994~1997년 자료에는 1994년 6월 이전에 판매된 세제 혜택이 없는 연금보험상품이 조사되었고, 1998년 자료에는 1994년 6월 도입된 세제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저축이, 2001~2004년 자료에는 2001년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세제 변화 이후 판매된 연금상품(2001~2004년 자료)이 분석대상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기별, 연금보험 상품 별로 가치분소득의 변화가 개인연금 불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치분소득 탄력성은 1994~1997년 기간 중 0.404, 1998년 0.153, 2001~2004년 0.31로 측정되었다.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었던 1998년과 2001~2004년 기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개인연금 불입액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를 추정해 본 결과, 2001년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개인연금불입액의 가치분소득 탄력성을 증가시켰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개인연금 제도는 노후소득을 하기 어려운 계층의 노후대비 노력에 혜택을 주어, 자발적인 노후대비 노력을 촉진하려는 제도이다. 그런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개인연금 불입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세제상의 혜택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커지며, 실제 노후소득을 사전에 준비하기 어려운 소득분위 하위 50% 집단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세제가 누진적이고, 면세점이 높아 과세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소득공제제도로 인한 불입액 변화액 및 변화율을 검토해 볼 때, 노후대비 수준을 높이는 데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분위는 소득 상위 10% 집단 정도라고 볼 수도 있다. 소득 상위 10% 집단의 경우 실제 노후소득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는 소득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연금제도의 세제혜택이 노후대비를 위한 유인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금융상품의 수익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이루어

지고 있는 개인연금 불입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세제상의 혜택은 당초 의도한 자발적인 노후대비 유인책으로서 거의 기능하지 못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01년 이루어진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세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2001년 세제개편은 소득증가에 따른 개인연금 불입액 증가에 기여하여 개인연금 활성화에 기여하였지만, 늘어난 세제혜택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2001년 세제개편은 개인연금이 실제 노후대비를 해야 하는 계층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성화되는데 기여했다기보다는 개인연금이 고소득층의 수익성 높은 금융상품으로서 활성화되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갖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정요섭(2003, 2006)은 본 연구와 동일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개인연금 불입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세제혜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이 면세점이 높고 저소득층은 주로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소득공제이던 세액공제이던 그 혜택은 여전히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후대비 수단으로서 개인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불입단계나 수령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세제혜택 이외의 수단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소득세제 하에서는 저소득층은 대부분이 면세이기 때문에 특별한 유인을 제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 가지 제안으로 소득세와 유사한 다른 세제, 예를 들어 개인연금을 가입한 가구 또는 개인들이 불입하고 있는 다른 저축상품에서 납부하는 이자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세해주는 정책적인 지원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사료된다. 이로 인한 혜택이 고소득층에게만 돌아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일정한 소득 범위에 있는 가구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에 관한 효과 분석은 적절한 자료를 활용한 추가적인 연구를 요한다.

## 참 고 문 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년도.
- 김기홍·안종범,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개인연금제도 도입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3.
- 김병연·이건호·신성환, 『은행권의 개인연금상품 도입을 위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4.
- 김원식, 『개인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한국금융연구원, 연구보고서, 1996.
- 대우경제연구소, 『한국가계패널조사』, 1~6차년도.
- 대한민국정부, 『2006~201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 2006. 9.
- 문숙재·김연정, 「가계의 개인연금 보유 여부와 불입액의 영향요인」,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제5호, 1997. 1, pp.265~277.
- 배준호, 「개인연금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Feldstein(1995)의 검토」, 『사회보장연구』, 제12권, 1996, pp.51~67.
- 전승훈·강성호·임병인(2004), 「선형패널자료 분석방법에 관한 비교연구」, 『통계연구』, 제9권, 제2호, 2004. 10, pp.1~24.
- 전승훈·임병인·강성호, 「개인연금 가입 결정 및 가입상태 변화 분석」, 『보험개발연구』, 제17권, 제1호, 2006. 3, pp.137~168.
- 전영준·한도숙, 『연금 과세체계 개편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0. 12.
- 정요섭, 「신·구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효과 비교」, 『리스크관리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01, pp.157~174.
- \_\_\_\_\_, 「신·구개인연금보험에 대한 금리, 세제효과 비교」, 『리스크관리연구』, 2003, pp.3~22.
- \_\_\_\_\_,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 분석」, 『보험개발연구』, 제17권, 제2호, 2006. 10, pp.41~60.
- 정운오·박찬웅, 「개정 세법상의 연금과세제도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 『회계저널』, 제10권, 2호, 2001. 6, pp.29~51.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자료』, 4~8차년도.
- Beck, S. "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s: Differentials in Opportunity and Use", *Journal of Gerontologist* 39, 1984, pp.596~602.

- Feldstein, M., "The Effects of Tax-based Saving Incentives on Government Revenue and National Sav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10, 1995, pp.475~494.
- Lunberg, S., R. Startz and S. Stillman, "The Retirement-Consumption Puzzle: a Marital Bargaining Approach",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87, 2003, pp.1199~1218.

## Abstract

We measured the disposal income elasticity of the personal pension savings(hereafter, PPS) and analyzed its deduction effect.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disposal income elasticity of the PPS was 0.404 during 1994~1997, 0.153 in 1998, and 0.31 in 2001, and the benefits of the PPS deduction were relatively beneficial to the high-income brackets. Although the PPS deduction was introduced to encourage a voluntary income security for the old-age, our empirical results imply that the PPS deduction does not function as an incentive for the low-income brackets. Thus, new alternatives are needed to introduce and implement so as to help the low-income earners prepare for sufficient income to expend during the old-age.

※ Key Words: elasticity, personal pension savings, personal pension savings deduction

【부 록】 개인연금 가입실태 및 가입가구의 특성

〈부표 1〉 연금보험 가입가구의 특징(『대우패널자료』)

구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구주연령	41.12	49.27	42.52	49.44	43.71	50.64	43.65	51.69	44.51	52.80
가구주성별(남성=1)	0.98	0.90	0.97	0.89	0.96	0.88	0.94	0.88	0.93	0.87
가구주 교육년수			11.61	10.42	11.39	10.42	11.77	10.55	12.05	10.12
배우자 유무(유=1)	0.96	0.87	0.97	0.86	0.95	0.85	0.94	0.85	0.93	0.84
가구원 수	4.12	3.84	4.17	3.71	4.20	3.70	4.21	3.62	4.07	3.62
18세 미만 가구원 수	1.48	1.03	1.56	1.04	1.54	1.02	1.54	0.96	1.45	0.94
가구 소유여부(소유=1)	0.60	0.71	0.66	0.74	0.67	0.74	0.68	0.74	0.72	0.74
경제활동상태(임금근로=1)	0.52	0.41	0.52	0.41	0.46	0.41	0.50	0.38	0.47	0.35
경제활동상태(非임금근로=1)	0.44	0.42	0.42	0.43	0.47	0.42	0.45	0.43	0.44	0.42
경제활동상태(실업=1)	0.01	0.03	0.01	0.02	0.02	0.02	0.02	0.02	0.03	0.05
경제활동상태(非경활=1)	0.03	0.15	0.05	0.14	0.05	0.15	0.04	0.17	0.06	0.18
소득	179.21	122.28	201.72	155.34	242.41	182.85	276.98	194.48	233.98	159.53
연금보험 불입액 (소득대비 비중)	10.30 (5.75)	0.00	10.69 (5.30)		12.53 (5.17)	0.00	14.07 (5.08)		13.33 (5.70)	
가구수 (전체 가구(=2071) 대비 비중)	304 (14.68)	1,767 (85.32)	282 (13.62)	1,789 (86.38)	381 (18.40)	1,690 (81.60)	373 (18.01)	1,698 (81.99)	361 (17.43)	1,710 (82.57)

〈부표 2〉 개인연금 가입가구의 특징(『노동패널자료』)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구주연령	43.68	50.54	43.59	51.12	43.98	52.21	44.83	53.07
가구주성별(남성=1)	0.94	0.83	0.93	0.84	0.92	0.84	0.93	0.84
가구주 교육년수	12.07	9.87	12.57	9.98	12.49	10.02	12.78	10.05
배우자 유무(유=1)	0.91	0.77	0.88	0.78	0.87	0.78	0.90	0.78
가구원 수	3.88	3.42	3.77	3.33	3.80	3.31	3.78	3.29
18세 미만 가구원 수	1.14	0.76	1.19	0.75	1.18	0.72	1.19	0.70
가구 소유여부(소유=1)	0.63	0.61	0.59	0.63	0.64	0.65	0.69	0.66
경제활동상태(임금근로=1)	0.60	0.45	0.60	0.46	0.57	0.45	0.71	0.42
경제활동상태(非임금근로=1)	0.33	0.29	0.32	0.29	0.36	0.28	0.23	0.30
경제활동상태(실업=1)	0.00	0.02	0.00	0.02	0.00	0.02	0.01	0.02
경제활동상태(非경활=1)	0.07	0.25	0.07	0.23	0.08	0.25	0.05	0.27
소득	242.47	154.78	309.44	202.13	342.81	203.83	382.54	223.59
개인연금 불입액 (소득대비 비중)	15.20 (6.27)	0.00	19.75 (6.38)	0.00	21.92 (6.39)	0.00	23.24 (6.08)	0.00
가구수 (전체 가구(=3,115) 대비 비중)	621 (19.94)	2,494 (80.06)	394 (12.65)	2,721 (87.35)	391 (12.55)	2,724 (87.45)	339 (10.88)	2,776 (89.12)